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9. 9 선고 2020가합273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상

담당변호사 장철원

피 고 B 주식회사

변 론 종 결 2021. 7. 15.

판 결 선 고 2021. 9. 9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C 도로 125㎡와 D 도로 383㎡에 관하여 각 2017. 9. 12.자 약정을
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피고의 단독 주주였던 E는 2017. 9. 12.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C 도로 125㎡와 D 도로 383㎡(이하 '이 사건 각 토지'라 한다)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(이하 '이 사건 약정서'라 한다)를 작성하여 주었고, E의 대리인 F와 원고는 같은 날 위 약정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(유한) G 작성 증서 2017년 제1164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.

나. 피고는 1981. 11. 25.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고 같은 해 12. 2. 해산등기를 마친 후 1984. 1. 5. 청산종결 등기를 마쳤다.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청산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였고, 2018. 10. 10. F가 피고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.

다. 피고는 1970. 11. 14. 서울 동작구 H 도로 1,400평(1996. 12. 13.경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4,628㎡가 되었다. 이하 'H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1970. 11. 2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1982. 2. 6. 위 H 토지에서 분할되었고, 2016. 12. 13.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이 생성되어 현재까지 피고의 소유로 남아 있다.

【인정 근거】갑 제1 내지 7, 9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하겠다고 약정한 E는 피고의 단독 주주였고, 이후 E가 보유한 주식을 F가 양수하여 현재 F는 피고의 최대 주주임과 동시에 피고의 대표청산인이다. 피고의 대표청산인인 F가 E로부터

피고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해야 할 의무도 함께 승계하였고, F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분할등기절차가 완료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,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.

나. 판단

회사와 주주는 서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고, 이는 주식이 1인 주주에

귀속하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, 이 사건 약정서는 E와 원고 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가 위 약정서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. 그리고 F가 E로부터 피고의 주식을 양수하여 피고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, 그러한 점만으로 F가 이 사건 약정서에 기초한 E의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, 원고 주장과 같이 F가 이 사건 약정서에 기초한 이 사건 각 토지 이전의무를 승계하였거나 위 이전의무의 존재를 승인하였다 하더라도,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약정서에 기초한 이 사건 각 토지 이전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.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서에 기초한 이 사건 각 토지 이전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윤도근, 판사 이승연, 판사 김동호